

「구미시 로컬크리에이터 육성 및 지원 조례안」

검 토 보 고 서

1. 발 의 자: 이정희 의원 외 21인

2. 제안이유

- 구미시의 자연·문화적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하여 지역적 가치를 창출하는 로컬크리에이터를 지역가치 창업가로 육성·지원함으로써 골목상권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함

3. 주요내용

- 목적, 정의, 시장의 책무(안 제1조~제3조)
- 지원계획의 수립, 지원사업, 위탁(안 제4조~제6조)
- 위원회 설치 및 운영, 포상(안 제7조~제9조)

4. 참고사항

- 관계법령
 - 「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 제8조, 제9조
 - 「구미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11조

5. 검토의견

○ 본 조례안은

- 지역의 가치와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 발전을 견인하는 지역 가치창업가¹⁾(로컬크리에이터)의 육성과 지원에 필요한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발의된 제정조례안으로,

○ 검토 결과,

- 안 제5조는 로컬크리에이터의 육성 및 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구미소상공인종합센터(구미시 송정대로 120, 구미상공회의소 4층)가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, 각종 소상공인 지원사업(카드단말기 이용료 지원사업, 대대손손가 가업승계 지원사업 등) 창구의 일원화로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.
- 다만, 전문적이고 효과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대행 업무 명확화 및 지속적인 운영 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.

1) 로컬크리에이터 : 지역을 뜻하는 로컬(Local)과 콘텐츠 제작하는 사람을 뜻하는 크리에이터(Creator)의 합성어로 지역문화 관광 및 자원을 기반으로 비즈니스 모델을 접목하여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업가